

2019년 12월 2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044-201-2331), 사무관 도재규(2346) / 제공일: 12월 24일(총 10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2020.1.1.일부터 닭·오리·계란에 대해 축산물 이력제 시행

〈 주요 내용 〉

- 2020년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
 - 닭·오리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 사육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은 가축이동 시에 반드시 이동 신고
 -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도축업자,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 등은 소관 영업자별로 이력번호 표시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 이력번호 신청·표시,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app)과 누리집(mtrace.go.kr)에서 축산물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정보를 통해 사육·포장·도축·판매 등의 단계별 거래정보 조회 가능
-
- 학교 등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700m²이상)의 식품접객업자는 국내산 축산물 이력번호 공개* 의무 부과

* 이력번호 게시·표시 의무: 수입산 이력축산물 → 국내산·수입산 이력축산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소·돼지에 시행하는 축산물이력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는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내산 소부터 도입하였으며, 수입산 쇠고기(2010년), 국내산 돼지(2014년), 수입산 돼지고기(2018년)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가축과 축산물의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축방역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하여 왔다.

○ 지난해 12월 축산물이력법 개정으로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시행 근거가 마련 되었고, 1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금년 12월에 개정하였다.

○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18.11월~'19.12월)을 추진하여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사육·도축·포장·판매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육단계 : 농장 등록, 가축 이동 신고, 사육현황 신고

- (농장등록) 닭·오리·계란 시범사업을 통해 농장등록이 되지 않은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지원실 1577-2633, 이하 축평원)에 농장식별번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가축 이동신고) 농장경영자(위임받은 계열화사업자를 포함, 이하 농장경영자)나 가축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이동

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축평원에 이동신고를 하고, 이동 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사육현황 신고) 농장경영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사육현황을 축평원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안드로이드(app 스토어)에서 이력제 신고 앱을 설치 후 활용

○ **도축단계 : 이력번호 신청·표시, 도축 처리결과 및 거래내역 신고**

- (닭·오리)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 판매업자 등에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계란)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결과를 선별포장이 완료된 날 신고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유기·복지농장, 닭 사육규모 1만수 이하 중 희망자

○ **포장·판매단계 :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 신고**

- (닭·오리)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닭·오리를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표시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처리 결과 및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5인 이상 포장처리업체는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 그 외는 장부 기록관리

- (계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선별포장 후 표시된 이력번호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판매점 등과 거래한 내역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HACCP 인증 상인은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신고, 그 외는 장부 기록관리

○ 소비자 : 이력번호 조회

- 소비자는 닭·오리·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mtrace.go.kr)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및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 대규모(700m² 이상) 식품점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표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메뉴 표시판, 별도 게시판 및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게시

- 그 동안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이력번호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국내산이력축산물로 확대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되면 닭·오리·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수급관리 등 정책적 활용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포장·판매업체 등 이력제 의무 준수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이력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참고 1

닭·오리·계란 이력제 단계별 준수사항

< 농장경영자(위임받은 계열화사업자 포함) >

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 효과

- 1 첫째, 닭·오리 사육에서 닭·오리고기, 계란의 유통까지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합니다.
- 2 둘째, 위생 등에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회수 및 유통 차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 3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를 제공합니다.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가 할 일은?

농장식별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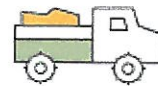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 내용: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농장을 이력지원실(1577-2633)로 문의하여 발급 신청을 하십시오.
- 제출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또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농장의 닭·오리·계란은 도축·출하가 제한됩니다.
 - ※ 닭·오리의 출하, 닭·오리·씨알을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할 경우에는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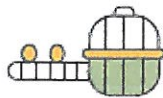
사육현황 신고

- 내용: 사육중인 닭·오리의 마릿수를 신고합니다.
- 기한: 매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까지
- 방법: 문자메시지, 이력관리시스템(계열화 사업자 신고 가능), 이력지원실(1577-2633)



이동 신고

- 내용: 닭, 오리, 씨알을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한 결과를 신고합니다.
- 기한: 이동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방법: 이력관리시스템 이력지원실(1577-2633)
 - ※ 도축장(닭, 오리) 또는 선별포장업체(계란)로 출하하는 경우에는 이동신고가 제외됩니다.



입란 신고(부화장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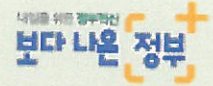
- 내용: 씨알을 부화기에 입란한 실적을 등록합니다.
- 방법: 이력관리시스템 이력지원실(1577-2633)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www.mtrace.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이력지원실에 승인 요청하세요.

문의전화 이력지원실 1577-2633



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 효과

- ① 첫째, 닭·오리 사육에서 닭·오리고기, 계란의 유통까지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합니다.
- ② 둘째, 위생 등에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회수 및 유통 차단이 가능하게 합니다.
- ③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를 제공합니다.

도축업자와 포장처리업자가 할 일은?

도축업자

- 농장식별번호 확인
 - 닭·오리를 도축하기 전 가금 이동신고서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합니다.
- 이력번호 발급 신청(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 농장별(권장)로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이력번호 체계(12자리 숫자)

구분	축종(1)	도축일자(6)	도축장(3)	일련번호(2)
닭	2	200101	001	01
오리	5	200101	00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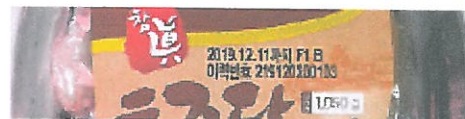
- 이력번호 표시
 - 최소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합니다.



- 도축처리결과 신고
 - 포장처리업체로 전산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실적 입력 후 자료 마감을 합니다.

포장처리업자

- 이력번호 표시 확인
 - 입고된 원료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합니다.
- 묶음번호 구성 및 신고
 - 도축일이 동일한 경우에 묶음번호 생성이 가능합니다.(단, 부분육은 전일 도축일까지 포함 가능)
- 포장처리 신고
 - 기한: 포장처리일로부터 5일 이내
- 이력(묶음)번호 표시
 - 최소 포장지에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합니다.



- 거래 신고
 - 내용: 입·출고처, 거래내역 등을 신고합니다.
 - 기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제공
- ※ 이력관리시스템 전산 신고 의무 사업장
 - 도축장 연접 또는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www.mtrace.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이력지원실에 승인 요청하세요.

☎ 문의 전화 이력지원실 1577-2633

2020년 1월 1일부터



'닭·오리·계란 이력제'가 시행됩니다.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행 효과

- ① 첫째, 닭·오리 사육에서 닭·오리고기, 계란의 유통까지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합니다.
- ② 둘째, 위생 등에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추적하여 신속한 회수 및 유통 차단이 가능하게 합니다.
- ③ 셋째,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를 제공합니다.

계란 선별포장업자와 수집판매업자가 할 일은?



- ☑ 농장식별번호 확인
 - 계란이력번호표시 의무자는 선별포장 전에 농장의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합니다.
 - ※ 계란이력번호표시 의무자
 - ①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 ② 유기식품 또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으로 직접 판매를 위해 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
- ☑ 이력번호 발급 신청(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
 - 농장별·산란일자별로 발급 신청을 합니다.

구분	축종(1)	발급월일(4)	의무자(3)	일련번호(4)
계란	3	0101	003	0001
- ☑ 이력번호 표시
 - 최소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합니다.
- ☑ 선별포장 실적 신고
 - 수집판매업체로 전산자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실적 입력 후자료 마감을 합니다.



- ☑ 이력번호 표시 확인
 - 입고된 제품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합니다.
 - ☑ 이력번호 표시(재포장 HACCP 인증업체)
 - 최소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합니다.
 - 재포장 HACCP 인증 수집판매업자가 선별포장업을 통해 공급받은 식용란을 소분·재포장하는 경우에 한함.
- 이력번호 301010030001
- ☑ 거래 신고
 - 내용: 입·출고처, 거래내역 등을 신고합니다.
 - 기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 ☑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제공
 - ※ 이력관리시스템 전산 신고 의무 사업장
 - 식용란수집판매업(재포장)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장(그 외는 장부 기록)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www.mtrace.go.kr)에서 회원 가입 후 이력지원실에 승인 요청하세요.

☎ 문의전화 이력지원실 1577-2633



2020.1.1.부터 가축거래상인도 양도·양수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농장경영자와 가축거래상인 등이 소 개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신고서를, 양수자는 양수신고서를 5일 이내 해당 위탁기관(축협 등)에 제출



가축거래상인과 농장경영자간 거래

- 소를 양도하는 농장경영자 → 양도신고
- 가축거래상인 → 양도시 양도신고, 양수시 양수 신고 (단,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은 농장경영자로서 양수양도신고)
- 소를 양수하는 농장경영자 → 양수신고

가축거래상인과 가축거래상인간 거래

- 소를 양도하는 가축거래상인 → 양도신고
- 소를 양수하는 가축거래상인 → 양수신고 (단,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은 농장경영자로서 양수양도신고)



※ 농장경영자가 소를 거래하는 경우 실 거래대상자를 대상으로 양도·양수 신고 (단, 실 거래대상자가 아닌 가축거래상인이 양도·양수자의 의뢰를 받아 단순운반을 위해 소를 이동하는 경우는 신고 제외)
※ 농장경영자가 동일하더라도 농장식별번호가 다른 농장으로 이동시에도 이동 신고

가축시장을 통한 가축의 거래

- 가축시장개설자(축협)에게 소의 양도 또는 양수에 필요한 정보 제공 (단, 농장식별번호가 있는 가축상인은 농장경영자로서의 정보 제공)
- 가축시장개설자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한 거래내역으로 농장경영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양도·양수 신고 같음

도축을 위한 출하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업자(도축장)가 도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

※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면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함 (위탁기관에서 양도·양수신고 접수 시 가축거래상인의 관할 지자체 등록 여부 확인)



양도·양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00만원 → 3차 위반 200만원 → 4차 이상 400만원)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 안내!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이행대상자가 확대됩니다.

Q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1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자
- 2 「학교급식법」제 4조에 따른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Q 신규이행대상자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 판매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하여야 합니다.
-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양념육, 소시지류, 베이컨류,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Q 언제부터 이행하면 되나요?

- **2020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수입산이력축산물은 기시행 중)
※ 관련 법률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Q 제도관련 문의사항

- ① 홈페이지: 국내산 축산물 이력제 www.mtrace.go.kr / 수입산 축산물 이력제 www.meatwatch.go.kr
- ②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 1688-002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이행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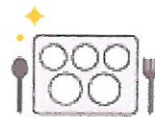
1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관련 -

2



학교의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학교급식법」 제4조 관련 -

3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관련 -

표시
기한

상품 판매·제공 시 부터
소진 시까지 게시
※ 공급받은 일자 기준 7일
이내에는 모든 상품 게시 필수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게시 또는 표시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

표시
방법

게시판 또는 인터넷 게시(보기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

- ①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 ②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 ③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④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 ⑤ 별도 게시판 또는 팸말
- ⑥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 ⑦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축산물 위생관리법)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고지하고 배송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

표시문구 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주의
사항

☞ 위 표시방법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 ① 계산대 ② 출입문 주변
- ③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 영업자가 공급받은 축산물
모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
음식으로 판매·제공할 때
게시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력번호를 조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
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

☞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별도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문자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설명 방법: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
복적으로 설명(1회 2번이상)

설명문구 예시

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

※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축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다 표시하여야 합니다.